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(안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